

대학 내 센터 협업운영 규정 (개정 2018. 10. 29.)

제정 2017. 12. 26 개정 2018. 10. 29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취업·창업진로 담당 부서 및 학생상담 부서 간에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원활한 협업을 하도록 함으로서 학생들의 취업, 창업, 학업 등의 진로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상조직) 본 규정은 교수학습센터, 학생상담센터, 교육혁신품질센터, e-learning센터, 취업사관교육센터, 창업교육센터, 사회공헌센터(이하 '각 센터'라 한다)를 대상으로 한다. (개정 2018. 10. 29.)

제3조(협업의 촉진) ① 각 센터의 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취업, 창업, 학업 등 진로지도를 통한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각 센터 간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상호 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·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협업을 촉진하고 협업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.

② 각 센터의 장은 적극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·협력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취업, 창업, 학업이 신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발굴한 협업과제 수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

③ 협업과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.

1. 각 센터 간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
2. 각 센터 간 행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
3. 학칙에 따라 각 센터 간 인가·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업무
4. 그 밖에 각 센터 간 협의·동의 및 의견조회 등이 필요한 업무

제4조(협업과제의 점검·관리 및 지원) ① 각 센터는 협업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그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
② 각 센터의 장은 그 센터의 협업과제의 수행 성과를 평가·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센터협업운영위원회 및 관련부서는 협업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학의 장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제5조(협업회의) ① 각 센터는 협업과제를 계획 및 실행, 평가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적인 협업회의를 시행한다.

② 협업회의는 대학 내 학생지원 센터가 윤번제로 지정하여 주관하며 회의결과를 센터협업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한다.

제6조(센터협업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 효율적 협업을 위하여 센터협업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, 위원은 위원장,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, 부위원장은 교수학습센터(총괄)센터장으로 하고, 위원은 각 센터의 장과 기획조정처장, 교무처장, 산학취업처장 및 대학교육혁신원장으로 한다.

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각 센터 소속 교직원 중에서 1인을 윤번제로 지정하여 운영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센터협업운영위원회의 운영) ① 센터협업운영위원회는 각 센터 간의 협업이 촉진되도록 지원함으로서 원활한 연계·협력이 되도록 한다.

② 센터협업운영위원회는 각 센터의 협업 실태를 점검·평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센터협업운영위원회는 협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, 협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부서 간 유기적 연계업무의 발굴 및 연계
2. 협업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홍보
3. 협업 활성화를 위한 자문 등 전문인력 및 기술지원, 취·창업지원
4. 협업 활성화를 위한 회의 및 세미나 개최
5. 그 밖에 협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.